

1

생리용품 바우처의 정의와 유형

1. 생리용품 바우처의 정의

- 생리용품 바우처(이용권)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전자적 증표를 뜻함

2. 생리용품 바우처의 유형

- 생리용품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됨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1. 추진개요

가) 추진배경

- 생리용품 가격 상승으로 일부 청소년이 신체에 유해한 대체용품을 사용 하는 등 사회 문제화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 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나) 사업목적

- 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다) 주요경과

- 보건복지부('16.9~'17.12) : 보건(지)소를 통해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현물 지원

- 여성가족부('18~):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로 업무 이관
 - '18년 하반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복지급여 수급 청소년에게 현물 지원
 - '19년 생리용품 지원 전자바우처 도입·시행

라) 법적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제3항

2. 운영 방식

가) 운영절차

- (신청단계) 지원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선정단계) 시·군·구는 행복e음을 통해 지원 결정 사실 통보
- (발급단계) 행복e음을 통해 시·군·구 대상자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연계하여 바우처 생성
- (사용·정산단계) 생리용품 바우처 이용자는 국민행복카드사별 가맹점에서 국민 행복카드를 사용하여 생리용품을 구매하고 카드는 가맹점에 구입비용 지급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구매비용 정산
 - ※ 시·군·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지정 기한 내에 예산 예탁
- (정보관리) 읍·면·동, 시·군·구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격변경사항 등 관리
- (사후관리) 읍·면·동, 시·군·구에서 사용증지 사유 발생 시 행복e음을 통해 바우처 사용 중지 조치

나) 사업 주체 및 역할

주 체		역 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등 사업 총괄 • 사업수행 예산 편성, 관리 • 사업 평가 및 지도·감독
시·도	청소년과 등 사업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예산 교부 및 조정 • 시·군·구 사업 관리 감독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예산 예탁 및 집행상황 관리 •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예탁금 관리 및 정산 • 카드사와 바우처 비용(구매비용) 정산 •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및 통계 관리 • 바우처 시스템 관리·운영
전담금융기관(카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배송 • 물품판매점 가맹 및 품목관리 • 구매비용 지급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정산
수탁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예탁계좌 및 예탁금 입/출금 관리

▣ 생리용품 바우처 업무 흐름도 ▣

구 분	주 체	내 용
서비스 신청	본인, 부모 등 신청권자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상담	읍·면·동 담당공무원 (행복e음)	▶ 신청서 접수 및 등록 ▶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 확인
↓		
대상자 선정·결정	시·군·구 담당공무원 (행복e음)	▶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결과 통보	시·군·구 담당공무원 (행복e음)	▶ (시·군·구 → 신청인) 선정결과 통지(우편, 문자 등) ▶ (행복e음 → 전자바우처) 결정정보를 행복e음 시스템에서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전송
↓		
카드 신청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인, 청소년 본인 등	▶ 전담금융기관(은행, 카드사)에 카드신청 * 금융기관에 따라 전화, 인터넷 등으로 발급신청 가능
↓		
카드발급 정보전송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 통해 카드 발급 정보 수신 ▶ 바우처 정보 국민행복카드 사업자로 전달
↓		
결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자	▶ 생리용품 구매가능 가맹점에서 구매 * 청소년 본인, 신청인 카드로 결제 가능
↓		
정산	시·군·구 담당공무원 카드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계좌에 비용 예탁(시·군·구) ▶ 바우처 결제 비용 청구(카드사) ▶ 바우처 정산(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정보관리	읍·면·동/시·군·구 담당공무원	▶ 바우처 대상자 사망·전출입 등 정보관리 * 행복e음 변동내역 주기적으로 확인
↓		
사후관리	읍·면·동/시·군·구 담당공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바우처 생성 및 사용 안내 ▶ 부정사용 등 사용중지 사유 발생 시 바우처 사용중지 조치(읍·면·동 접수, 시·군·구 중지결정)

필수 안내사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분	내용																		
서비스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지역 내 바우처 지원 대상 청소년(보호자)에게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및 신청 독려(문자, 우편, 전화 등) * 연초에는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연도 중 지원 자격을 충족한 경우, 개별 안내 등을 통해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신규 지원 시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등 																		
카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리용품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 통합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함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한 경우 기존 카드 사용 가능 - 신청서 접수 시 카드사별 발급처를 안내하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도록 안내 <p style="text-align: center;"><카드사별 발급처></p> <table border="1" data-bbox="435 860 1270 1328"> <thead> <tr> <th>카드사</th> <th>발급처</th> <th>문의처</th> </tr> </thead> <tbody> <tr> <td>BC카드</td> <td>우체국,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 체크카드 발급을 원하는 경우, 해당 은행 계좌를 소지해야 함</td> <td>1899-4651</td> </tr> <tr> <td>삼성카드</td> <td>신세계 백화점, 세이 백화점 고객센터, 삼성카드 홈페이지 및 앱,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td> <td>1566-3336</td> </tr> <tr> <td>롯데카드</td> <td>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롯데카드 홈페이지 및 앱,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td> <td>1899-4282</td> </tr> <tr> <td>신한카드</td> <td>전국 신한은행, 신한카드 영업점,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앱, 신한카드 콜센터(1544-8868)</td> <td>1544-8868</td> </tr> <tr> <td>KB국민카드</td> <td>전국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및 앱, KB국민카드 콜센터(1599-7900)</td> <td>1599-7900</td> </tr> </tbody> </table>	카드사	발급처	문의처	BC카드	우체국,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 체크카드 발급을 원하는 경우, 해당 은행 계좌를 소지해야 함	1899-4651	삼성카드	신세계 백화점, 세이 백화점 고객센터, 삼성카드 홈페이지 및 앱,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1566-3336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롯데카드 홈페이지 및 앱,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1899-4282	신한카드	전국 신한은행, 신한카드 영업점,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앱, 신한카드 콜센터(1544-8868)	1544-8868	KB국민카드	전국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및 앱, KB국민카드 콜센터(1599-7900)	1599-7900
카드사	발급처	문의처																	
BC카드	우체국,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 체크카드 발급을 원하는 경우, 해당 은행 계좌를 소지해야 함	1899-4651																	
삼성카드	신세계 백화점, 세이 백화점 고객센터, 삼성카드 홈페이지 및 앱,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1566-3336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롯데카드 홈페이지 및 앱,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1899-4282																	
신한카드	전국 신한은행, 신한카드 영업점,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앱, 신한카드 콜센터(1544-8868)	1544-8868																	
KB국민카드	전국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및 앱, KB국민카드 콜센터(1599-7900)	1599-7900																	
바우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행복카드사별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온·오프라인 가맹점 안내 ▶ 바우처 결제시 유의사항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옥션, 지마켓, 쿠팡-결제수단 선택 시 '바우처 결제' 선택 * 간편결제가 선택되지 않도록 유의 (붙임2 참고) ☞ (오프라인)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로 생리대와 기타 물품을 함께 결제하는 경우,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잔액이 있어야 승인됨(생리대 외의 물품은 바우처로 구매 불가) *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바우처 전용카드인 경우에는 생리대만 결제해야함 																		

3 대상자 선정

1. 신청

가) 지원기준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9~24세

- 지원기간 : 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
(25년 기준 2000. 1. 1. ~ 2016. 12. 31.)

나) 신청자격

○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시설장 명의의 카드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대상 청소년이 시설을 퇴소할 시 반드시 바우처 중지처리 하도록 안내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14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청소년 본인 외의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 ※ 시설아동,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보호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앱 이용

라) 신청기간

- '25.1월~'25.12월(단, 사업연도 전환 등에 따른 업무처리 소요기간 등 고려)
 - ※ 결정통보 및 바우처 송수신은 12월 넷째주 금요일까지 완료하여야 함(이후 신청접수·바우처 송수신 분에 대해서는 바우처 생성 불가)

마) 신청서류

- 공통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 ※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로, 서식 제2호 양식 활용
 - ③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별 제출 서류
 - ① 청소년 본인 신청
 - 신분증 사본(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 ② 부모, 가족, 친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제출
 - ③ 후견인·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자격 확인 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바)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 지원 대상 결정 후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바우처신청서 상의 신청인)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지원 가능함을 반드시 안내
 - 단,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 명의의 기발급 국민행복카드가 있을 경우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대상자 결정, 바우처 송수신 완료 후 익일부터 결제 가능
 - * 신청인 : 부모 또는 부모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모대신 청소년을 양육하는 주양육자
- 카드사용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카드사용자를 변경하고 변경된 카드사용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도록 안내(서식 제6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카드사용자 변경 신청서 활용)
 - * 읍면동에서 변경 접수 후, 시군구에서 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 하여야 변경 처리됨
 - * 변경된 카드사용자도 청소년 주양육자로 한정하며, 담당 공무원은 카드사용자가 청소년의 주양육자임을 증빙하는 관계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예1) 청소년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의 카드로만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 신청인란에 청소년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청소년 본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예2) 청소년의 모가 신청하고 모의 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인란에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청 후, 청소년 본인과 모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예3) 청소년 모의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청소년 부의 카드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인을 부로 변경하고 부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시 유의사항

- 1)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은행, 카드사)을 방문하거나 전용 콜센터,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서 상의 신청인 명의 카드를 발급해야함을 안내
- 2) 14세 미만의 대상자 : ① 신청인(부모 등 주 양육자) 명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신청 안내
- 3) 14세~24세 대상자 : ① 본인 명의 체크카드 또는 ② 신청인(부모 등 주 양육자) 명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신청 가능 안내
 - ※ 단,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카드 발급 신청 전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여부 등 카드사별 확인 필요
 - * 전용카드 : 계좌압류, 신용등급미달로 인하여 체크·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융활동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발급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8대 바우처 전용카드와 다른 카드이므로, 전담금융기관에 별도 발급 문의 필요)
- 4) 국민행복카드사별 가맹점이 상이함을 반드시 안내

사) 신청서 입력

-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접수
- 시·군·구 담당자는 결정 후 반드시 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 처리 및 송수신 성공하여야 바우처가 생성됨에 주의
- ‘접수’ 처리 후, 오류사항 발견 시 시·군·구에 신청취소 및 접수반려 요청 (단, 시·군·구에서 결정·통보 이후에는 취소·반려 불가)

2. 결정 및 통보(시·군·구)

가) 결정

- 읍·면·동에서 접수된 신청인에 대해 신청서류 및 자격기준, 연령기준을 확인하여, 대상자 결정·통보 처리 및 바우처 시스템으로 전송 처리
 - ※ 신청 접수 후 당일 결정·통보 및 전송 권장(특히 바우처 시스템 운용 상, 매월 말 신청분에 대해서는 결정일이 익월로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신청정보 오류 등으로 정보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 취소·접수반려 실시(행복e음)

나) 통보

- 시·군·구는 읍·면·동에서 ‘접수’ 처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자 여부(적합/부적합), 바우처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정통지문 및 이용자 안내문을 서면 또는 문자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통지(서식 제3호, 제4호, 제5호)
 - 바우처 결정 통지 시 사업 홍보물, Q&A 등 추가 자료를 첨부하는 등 바우처 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상세 안내 필요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2 제3항에 따라 결정 후 결정 또는 기각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e그린 활용 등 통지방법은 지자체 자체 계획에 따라 시행)
- 결정통지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출력 활용
 - ☞ (서식 제3호)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 ☞ (서식 제4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이용자 안내문

다) 지원시점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 * 최초 지원금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은 바우처 송수신 완료된 날의 익일부터 사용 가능

3. 이의신청(시·군·구)

가) 이의신청 방법

-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준용
- 신청권자 : 지원 신청권자와 동일
- 이의신청 기한 : 이용자 선정 결과 또는 지원 중지 등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서식 제7호)

나)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접수 :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검토 :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등 검토
- 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검토 결과 및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4 대상자 자격관리

1. 변동관리

가) 자격·지원 금액 유지

-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자격은 「자격(소득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유지

나) 자격 변동 유형 별 처리 방법

- 행복 e음 상의 '처리할 일' 확인 후 처리 : 시·군·구 사업담당이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변동대상자를 처리 하여야함
 - 자격기준 미충족 : 자격기준 미충족 사실이 확인되어 자격 중지 정보가 바우처 시스템에 수신된 날의 익일부터 바우처 사용이 중지되며, 미사용한 바우처 회수됨
- 행복 e음 상의 '인지할 일' 확인 : 시·군·구 사업담당이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변동대상자를 인지하여야 함
 - 대상자 사망 : 사망이 확인되어 자격 중지 정보가 바우처시스템에 수신된 날의 익일부터 바우처 사용이 중지되며 미사용한 바우처 회수됨
 - 대상자 국적상실 또는 국외 이주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사실이 확인되어 자격 중지 정보가 바우처시스템에 수신된 날의 익일부터 바우처 사용이 중지되며, 미사용한 바우처 회수됨
 - 대상자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임이 확인되어 자격 중지 정보가 바우처시스템에 수신된 날의 익일부터 바우처 사용이 중지되며, 미사용한 바우처 회수됨
 - 25세 도달 시 : 25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생성,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익월 1월 1일에 소멸
- 대상자 본인 또는 신청인이 직접 중지신청사유를 신고한 경우
 -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행복e음 시스템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중지 신청서(서식 제8호) 접수 후 시·군·구에서 최종 결정
 - 중지 신청을 접수, 결정, 송신하여 자격 중지 정보가 바우처시스템에 수신된 날의 익일부터 바우처 사용을 중지하고 미사용한 바우처 회수

변동 사유별 바우처 자격관리(행복e음)				
변동사유	관리시기	관리사항	통지서 상 표시	자격변동 적용시점
청소년의 사망	사망 사실 확인 시	자격 중지	상실 > 사망	바우처시스템에 변경정보 수신된 날의 익일부터
국적상실 국외이주	상실·이주 사실 확인 시	자격 중지	상실 > 기타(말소)	상 동
본인포기	이용자 본인 신청 시	자격 중지	중지 > 기타(본인포기)	상 동
국외체류 90일 이상	국외체류 90일 이상 확인 시	자격 중지	중지 > 기타(국외체류 90일 이상)	상 동
자격기준 상실	행복e음 주기적으로 자체점검	자격 중지	중지 > 기타(자격상실)	상 동
지원종료 연령 도래	25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자격 중지	중지 > 기타(제공기간 만료자)	25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 자격 중지 후 잔액 결제 불가
 ※ 변동 사유 발생 시 기사용 바우처는 환수하지 않으며, 미사용 바우처는 회수 조치 됨

2. 자격변동안내

-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자격변동 발생 시, 행복e음을 통해 자격변동 확인 후 변동사유에 따라 사용중지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 문자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통지(중지사유를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 ※ '본인포기', '자격기준 상실', '국외체류 90일 이상' : 기준 충족할 경우 재신청 가능함에 대해 안내
 - ※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망의 경우 안내 생략 가능

3. 재신청

○ 자격기준을 재충족 할 경우 재신청 가능

※ 재신청 시 재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바우처 생성하되, 1회 지급액수(바우처 6개월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신청일로부터 생성될 바우처와(6개월바우처 - 6개월 이내 기사용 바우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바우처 생성됨

- (예1) 1월1일 : 6개월 바우처 생성 2월1일 : 5개월 바우처 사용
2월20일 : 자격중지 4월1일 : 재신청
☞ 3개월(4월~6월) 바우처가 아닌 1개월 바우처(6개월 - 5개월) 생성
- (예2) 1월1일 : 6개월 바우처 생성 2월1일 : 2개월 바우처 사용
2월20일 : 자격중지 4월1일 : 재신청
☞ 3개월(4월~6월) 바우처와 4개월 바우처(6개월 - 2개월) 중 작은 3개월 바우처 생성
- (예3) 1월1일 : 6개월 바우처 생성 및 사용(전량 소진)
2월20일 : 중지신청 4월1일 : 재신청
☞ 생성되지 않고 7월1일에 6개월 생성

4. 개인정보보호

○ 생리용품 바우처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금융전담카드사 등은 신청자 또는 대상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를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 분석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71조)

5 국민행복카드 발급

1. 카드 형태

-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바우처 결제만 가능한 정부 보조금 인증 전용 카드로서 체크·신용카드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발급)의 형태로 발급되며, 체크카드의 경우, 각 국민행복카드사별 체크카드 연결을 위한 계좌 필요

■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

카드사	은행명
BC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하나은행 ※ 발급을 원하는 은행의 계좌를 반드시 보유해야 함
롯데카드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삼성카드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삼성증권,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 해당 결제은행이더라도 증권계좌 및 가상계좌는 신청 불가함
신한카드	신한은행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2. 카드 신청

■ 국민행복카드 신청 ■



○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①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발급

- 아래의 '발급처' 또는 카드사별 전용콜센터,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국민행복카드(체크·신용카드) 발급 가능(세부 방법은 은행 및 카드사별 확인)
- ※ 미성년자 명의 체크카드 신청 시 법정대리인이 동행해야 하거나 기타 미성년자 카드발급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 카드사별 신청방법이 상이하므로 방문 전 카드사 별 확인 필수
- ※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계좌개설이 필요한 경우는 직접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명의 계좌개설 시 방문 전 은행별 확인 필수

▣ 카드사별 발급 방법 및 발급처 ▣

카드사명	구분	발급처	문의(안내)
BC카드	방문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 신한,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1899-4651 및 각 은행 (카드사)별 콜센터
	전화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 신한,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 단, 대구·부산·경남·수협은행은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전화발급 시 해당은행 계좌가 필요 ※ 체크카드의 경우, 해당은행 계좌 소지 회원에 한해 발급 가능	
삼성카드	방문/전화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센터서비스센터 및 인터넷홈페이지(www.samsungcard.com), 삼성카드App, 전용콜센터(1566-3336)	1566-3336
롯데카드	방문/전화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롯데카드 홈페이지(www.lottecard.co.kr), 롯데카드App, 전용콜센터(1899-4282)	1899-4282
신한카드	방문/전화	전국 신한은행/신한카드 영업점,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신한카드 App, 신한페이판 App, 신한은행 솔(SOL) App, 신청전용ARS(080-700-2030), 전용콜센터(1544-8868) ※ 신한카드 기존 회원은 콜센터 통한 재발급/추가발급 가능	1544-8868
KB국민카드	방문/전화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App, KB국민카드 홈페이지(card.kbcard.com) 전용콜센터(1599-7900)	1599-7900

②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 계좌압류, 신용등급미달 등 체크·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바우처 금액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카드로, 아래의 발급처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계좌가 연결되지 않는 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방식)

■ 카드사별 전용카드 발급처 ■

카드사	전용카드 발급처
BC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삼성카드	신세계백화점, 세이백화점 내에 위치한 고객센터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신한카드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

-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있을 경우 별도의 카드신청절차 없이 기존에 발급한 카드 이용 가능
-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변경 또는 카드훼손·분실 등으로 인한 카드 재발급 시 전담금융기관(카드사)을 통해 재발급
 - * 분실한 경우, 재발급 시 까지 이용불가, 분실사실 미신고 또는 신고지연으로 타인이 사용한 경우 바우처 복원되지 않음

3. 카드발급 및 배송

- 발급처 직접 방문 시 카드종류(체크·신용)와 발급처의 카드보유 상황에 따라 방문 당일 카드 발급 또는 인편 배달을 통해 카드배송

6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기준

1. 지원기간 및 금액

가) 지원기간 : 9~24세 여성청소년

나) 지원금액 : 월 14,000원

2. 바우처 지급(생성)

가) 지원 개시 : 지원대상 결정 후 바우처 전송수신 완료 된 날의 익일부터 지급

나) 바우처 생성·소멸 주기 : 반기별 연 2회 생성(1월, 7월), 1년 주기로 소멸

※ 바우처 생성 및 소멸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문자 발송됨(서식 5 참조)

※ 문자 수신 전화번호 등 대상자 연락처 정보 정정 방법 : 행복e음 시스템 바우처변경신청관리 화면에서 처리(붙임3 참고)

다) 신규 신청

- (바우처 생성주기) 신청일 기준으로 최초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바우처 생성달 (1월, 7월) 전달까지 기간 분을 지급 후, 다음 바우처 생성 달부터 6개월분 생성 - (상반기) 대상자별 월지원액 × 최초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6월까지 생성

■ 신청일에 따른 지원금액 ■

신 청 일	지 원 금 액	
2025년 01월01일 ~ 31일	연 168,000원	(상반기) 14,000원 × 6개월 = 84,000원 (하반기) 14,000원 × 6개월 = 84,000원
2025년 02월01일 ~ 28일	연 154,000원	(상반기) 14,000원 × 5개월 = 65,000원 (하반기) 14,000원 × 6개월 = 84,000원
2025년 03월01일 ~ 31일	연 140,000원	(상반기) 14,000원 × 4개월 = 56,000원 (하반기) 14,000원 × 6개월 = 84,000원
2025년 04월01일 ~ 30일	연 126,000원	(상반기) 14,000원 × 3개월 = 42,000원 (하반기) 14,000원 × 6개월 = 84,000원
2025년 05월01일 ~ 31일	연 112,000원	(상반기) 14,000원 × 2개월 = 28,000원 (하반기) 14,000원 × 6개월 = 84,000원
2025년 06월01일 ~ 30일	연 98,000원	(상반기) 14,000원 × 1개월 = 14,000원 (하반기) 14,000원 × 6개월 = 84,000원
2025년 07월01일 ~ 31일	연 84,000원	(하반기) 14,000원 × 6개월 = 84,000원
2025년 08월01일 ~ 31일	연 70,000원	(하반기) 14,000원 × 5개월 = 70,000원
2025년 09월01일 ~ 30일	연 56,000원	(하반기) 14,000원 × 4개월 = 56,000원
2025년 10월01일 ~ 31일	연 42,000원	(하반기) 14,000원 × 3개월 = 42,000원
2025년 11월01일 ~ 30일	연 28,000원	(하반기) 14,000원 × 2개월 = 28,000원
2025년 12월01일 ~ 24일	연 14,000원	(하반기) 14,000원 × 1개월 = 14,000원

라) 자격유지 시

- 지원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익년도 바우처 신청 없이도 바우처 자동 생성
 - 매년도 1월, 7월에 각 6개월분씩 지급되며, 미사용 바우처는 익년 1월 1일 소멸

마) 지원 종료

- 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

3. 바우처 사용 방법

가) 지원 가능한 품목(물품)

- 국민행복카드 가맹 유통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
- 유통점에 비치되어있지 않거나 비치되어 있더라도 바코드(Bar-code) 등으로 가맹점 POS 등록관리가 불가능한 품목은 구매 불가
- 유통점별 품목 및 단가가 서로 다름에 유의
- 이 지침 외에 생리용품 구매 절차에 대해서는 각 유통점의 원칙 준용

나) 구매 및 결제

- 대상자는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구매처)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으로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품목(생리용품) 별도 관리가 가능한 POS를 운용하는 곳에 한해 가능

■ 결제 가능한 유통점 ■

카드사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지마켓, 옥션,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쿠팡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GS더프레시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편의점
롯데카드	롯데카드 땡샵, 옐포인트몰, 베팅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롯데마트, VIC마켓,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편의점
신한카드	신한카드 올댓쇼핑,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CU편의점
KB국민카드	KBPAY쇼핑, 국민행복몰, 쿠팡	GS25편의점, CU편의점

○ (초과결제)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본인부담으로 청구되므로 유의해야 함

- * (체크카드) 본인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지원 금액 내로 구매하는 경우 결제 가능
 예) 잔여 바우처 포인트가 1만원인 사람이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연결 계좌 잔고가 0원인 상태에서 1만원짜리 생리대 구매 → 결제 가능
 예) 잔여 바우처 포인트가 1만원인 사람이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연결 계좌 잔고가 1천원인 상태에서 2만원짜리 생리대 구매 → 잔고 부족(결제 불가)
 예) 잔여 바우처 포인트가 1만원인 사람이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연결 계좌 잔고가 3만원인 상태에서 2만원짜리 생리대 구매 → 1만원은 바우처 차감, 1만원은 본인 계좌 잔고에서 차감

※ 바우처 포인트 금액 내로 구매했으나 잔액 부족 사유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잔고가 없고, 생리대 외에 다른 물품을 함께 결제한 것이 아닌지 확인 필요

- * (신용카드) 바우처 포인트 내에서 생리용품 구매하는 경우 카드대금 청구 시 생리용품 구매 비용 차감 후 청구됨
 예) 잔여 바우처 포인트가 1만원인 사람이 3만원짜리 생리용품을 구매한 경우, 1만원은 바우처 포인트에서 차감되고 2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청구됨

- (배송비) 배송비는 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으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G마켓에서는 무료배송 상품만 구매 가능(유료배송 상품 구매 불가)
 - G마켓 외 쇼핑몰에서 유료배송 상품 구매 시 배송비는 본인 부담
 - * (국민행복카드가 체크카드인 경우) 유료배송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배송비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결제 가능
 - * (예) 잔여 바우처 포인트가 1만원인 사람이 7천원의 생리대를 구매하고 배송비 3천원이 부과된 경우, 7천원은 바우처 포인트에서 차감되고 배송비 3천원은 본인 부담
- (전용카드) 바우처 포인트 내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잔여 바우처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본인이 초과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 전용카드로 온라인 구매 시에는 무료배송 상품만 구매 가능

다) 결제 취소

- 결제 취소 후 즉시 재결제 시에는 바우처 생성에 시간이 걸려(약 3분)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 3분 후 재결제 필요
- 바우처 이용기간 내 바우처 이용 건 취소 시 한도 복원
 - * (예) 바우처 이용기간이 2025.01.01~2025.12.31 인 경우
 - 2025.1.5. 바우처 1만원 사용 후 2025.2.20. 결제 취소 → 바우처 1만원 복원
 - 2025.12.20. 바우처 1만원 사용 후 2026.1.20. 결제 취소 → 바우처 1만원 소멸

4. 하나의 카드에 바우처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바우처 차감 방법

- 주민등록 기준 연장자부터 차감

5. 생리용품 바우처와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는 따로 결제해야 함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자가 생리대 구입 시 기저귀(조제분유)를 구입 할 경우에는 생리대와 기저귀(조제분유)를 2회로 나누어 별도로 결제하도록 반드시 안내 바람
 - ※ 동시에 한번 결제할 경우 생리대 구입금액이 본인 카드 대금으로 청구됨
 - ※ 본인 카드대금 부담 발생 시 :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점 방문을 통한 취소 후 재결제, 온라인의 경우 전체금액 취소처리 후 바우처로 재결제 필요

1. 부정사용 유형

- 바우처 또는 바우처로 구매한 물품을 거래하여 현금화하는 경우
-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 지원받은 바우처를 지원 대상 청소년에게 전달하지 않고 대리인 또는 타인이 횡령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등

2. 부정사용 적발 시 조치

- 부정사용 적발·신고 시 시·군·구(읍·면·동)는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공문으로 바우처 사용중지 요청(수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부정사용 바우처 대상자에게 결정·통지 후 부정사용한 바우처 금액 환수
 - *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 ※ 타인의 바우처 카드를 강취·횡령하거나,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에 관한 위반 사항은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처벌 가능
 - ※ 지원된 바우처로 구매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 자격을 취소하며 잔여 지원기간에 대해 추가 지원 신청 등 불가, 또한 생리용품 지원물품 판매행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 중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받게 한 경우'에 해당하며, 동법 제54조 제3항의 벌칙 적용 가능

○ 부정사용 환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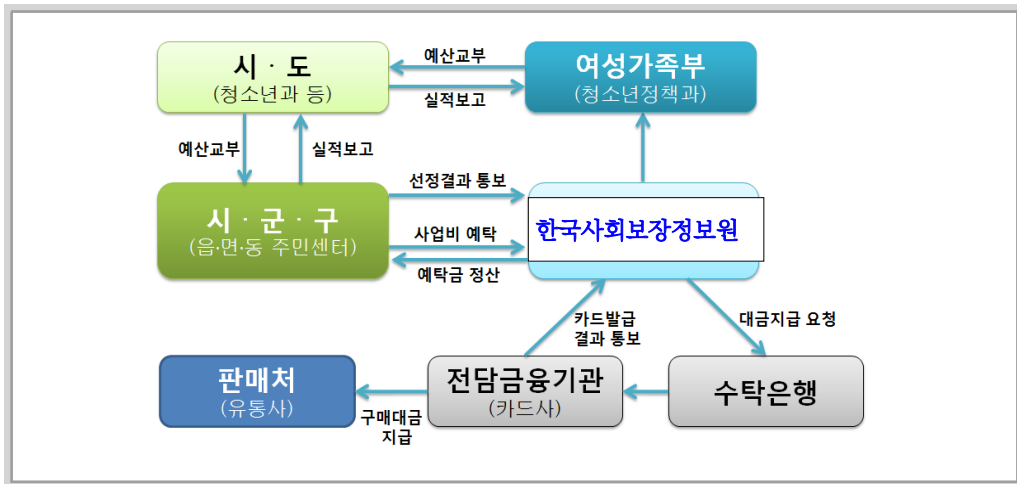
구 분	주 체	내 용
↓		
확 인	시·군·구 (읍·면·동)	바우처 부정사용 여부 확인
↓		
중 지	시·군·구 (읍·면·동)	바우처 사용중지 요청
↓		
통지 및 입금계좌 안내	시·군·구	대상자에게 조치내용 및 환수금액 통지
↓		
환 수	시·군·구	환수금액은 국고만 여성가족부로 반납 처리
↓		
통 보	시·군·구	여성가족부, 시·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환수결과 통보

1. 위탁 주체와 수행기관

가) 추진 체계

- (위탁주체) 여성가족부
- (위탁업무 수행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생리용품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며, 관련 예산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관리



나) 사업비 예탁 및 사용금액 지급

- 시·군·구 지자체는 여성가족부 및 시·도로부터 바우처 비용 지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교부받아 시·군·구비가 포함된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
 - * 예탁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로부터 예탁받은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와 바우처 사용 비용을 정산
 - * 자금의 출납은 카드사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한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매월 1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생리용품 바우처 사용 내역 정산 처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매월 예탁금 정산내역 및 예탁금 부족 정보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제공

다) 사업비 예탁시기

- 대상자가 자유롭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업비를 6개월씩 나누어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 예산확정 시 즉시 예탁, 사업비 예탁 기한은 지자체 보조금 지급 통보 시 별도 안내 (상황에 따라 추가 예탁 가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여성가족부, 시·도, 시·군·구로 매월 생리용품 바우처 사용분에 대해 정산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사업 종료 후 최종 정산 실시
 - ※ 바우처 사용액 중 예탁액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비용은 차년도 예탁금으로 지급처리(교부된 보조금 잔액이 있음에도 예탁처리를 하지 않아 미지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관계자별 예산집행 관련사항 ■

이해관계자	관 련 내 용
대 상 자	서비스 및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유 통 점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수령
지방자치단체	내역사업별 예산 편성, 사업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 사업비(국고보조금+지방비) 예탁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 환수 등 행정처분
여성가족부	지자체별 예산 배분액 총액 결정 내역사업별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마련 국고보조금 교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업무 위탁 및 관리·감독, 환수 등 행정처분관리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바우처 생성·이용내역 관리, 예탁금 정산, 예탁금 입출금 계좌관리 카드사에 서비스 비용 지급, 미사용 바우처 회수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카드사)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바우처 카드 보급 유통점에 대한 물품비용 지급 ※ 유통점(가맹점)과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간 가맹점 계약에 따라 카드전표 매입 후 3~4영업일 내에 대부분 지급

1. 바우처 금액의 청구 및 지급

가) 청구

- (청구기관) 유통업체
- (금액청구) 카드 단말기를 통해 전달된 바우처 사용금액이 자동으로 카드사에 청구됨
 - * 국민행복카드(BC, 롯데, 삼성, 신한, KB국민)를 활용하여 생리용품 바우처 대상자가 생리용품 구매에 사용한 금액

나) 지급

- (지급기관)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카드사)
- (지급방식) 유통사가 생리용품 바우처 결제금액을 청구
 - 청구일로부터 3~5일 이내에 국민행복카드 사업자가 해당 비용을 유통사에 입금
 - 국민행복 사업자(카드사)는 유통사에 바우처 결제금액 지급 시 카드사와 유통사가 사전 체결한 가맹점계약에 따라 적용키로 한 가맹점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유통사에 지급

2. 비용의 정산

■ 정산 절차 ■

구분	주체	업무 내용
① 계좌개설	여가부 (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부) 예탁금 지자체 교부 및 지급계좌 개설 요청 • (정보원) 여가부로부터 예탁계좌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탁
② 입금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및 시·도비 교부 시기 및 바우처 비용 지급 일정에 따른 예탁 마감일을 감안하여 예탁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기에 예탁
③ 대금지급	카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구매 후 유통점에 구매비용 지급(결제일 기준 3~5일내)
④ 대금청구	카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 지원 대상 물품에 대한 카드이용내역을 당월 10일까지 정보원에 청구
⑤ 대금정산	정보원 (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된 카드이용내역과 결제액을 시·군·구별로 비교·확인하여 예산 집행 및 운영
⑥ 내역통보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지급내역(전월 지출된 총금액) 시·도에 통보

- 카드사와의 비용 정산 업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처리(매월 1회,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지급하며, 연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할 경우 연휴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
- 카드대금 지급 시점에 해당 지자체의 예탁금액이 부족할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사에 대한 비용지급이 중단됨에 유의
- 시·군·구의 비용예탁이 늦어지는 경우 카드사에 비용의 지급시기가 연기될 수 있으므로, 시·도에서는 비용 예탁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관리 요망
 - ※ 예탁금 입금 지연 사례는 국회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임을 양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자수입이 시·군·구에 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좌 개설 시 이자수입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각 시·군·구별 예탁금 사용 잔액 및 이자수입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구가 지정한 계좌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급 처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예탁금 사용 잔액 및 이자수입 환급 시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되, 절사한 금액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수입으로 처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업연도 종료 시 이용자별 보유 증인 바우처(지원금)를 환수 처리
- 정산은 카드사에서 매입(결제/결제취소)으로 확인한 일자 기준으로 함
 - ※ '21년 12월 31일에 결제를 했더라도, 카드사 매입이 '22년 1월 2일에 발생하였다면, '22년도 사업비에서 카드사에 지급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연간 사업 종료 후 익년 2월말까지 예탁금 잔액 및 이자를 시·군·구에 환급하고, 여성가족부에 최종 정산내역 보고

3. 과오 청구 금액의 처리

- 과오청구 금액: 카드사의 시스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초과 바우처 결제 금액
- 과·오 청구 금액 처리 방안
 - 카드사 내부적으로 고객 및 가맹점의 협조를 구하여 매출을 취소하고 재처리
 - 위와 같이 업무 처리가 불가능한 특수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사업운영비로 처리
 - *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과·오 청구 처리 시 대상자에게 카드사에서 사전안내 실시

1. 중복지원 방지

-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별도의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 생리용품 바우처 수혜자와 지원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생리용품 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 시 중복지원 금지 조항 마련 및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사전 확인 조치 필요

2. 낙인효과 발생 예방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식과 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식이 상이할 경우 (예 : 취약계층 → 정부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비취약계층 → 지역화폐) 발생할 수 있는 낙인효과 예방 조치 마련

3. 정부 바우처 우선 집행

- 지자체 별도 재원을 투입하여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경우에도 정부 바우처 지원 사업비가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신청률 관리 및 국비 집행 관리 철저

4. 통보 조치

- 지자체에서 정부 지원사업(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할 경우 사업 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여성가족부로 통보 조치 필요

* 지원대상, 내용, 지원 방식, 시행 시기, 조례 제·개정 여부, 예산확보 사안 등을 포함하여 공문 통보(별도 양식 없음)

붙임 1 서 식

서식번호	서 식 명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4서식]
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제3호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서식 제4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이용자 안내문
서식 제5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문자 안내
서식 제6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카드사용자 변경 신청서
서식 제7호	이의 신청서
서식 제8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중지 신청서
서식 제9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부정사용 신고서

2025년도 청소년사업
제1편
현황 및 방향

청소년 복지사업
제2편
현황

청소년 보호사업
제3편

[서식 제1호]

■ 사회복지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외4서식] <개정 2024.7.1.>

(3쪽 중 1쪽)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첫만남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는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 이혼)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¹⁾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사유)
-----------------------------	------------	----	-------	------	-----	--------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 부모급여(보육료) 지원 포함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기본(<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연장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방과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3~5세)(<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6~12세)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유아학비(3~5세)(<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기본(<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연장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방과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3~5세)(<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6~12세)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유아학비(3~5세)(<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자격을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0~2세)기본보육 자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0, 1세 아동은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어린이집(0~2세)로 신청하면 됩니다. *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알뜰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읍 면 동	[]가시간병방문지원	지원대상자				
		신청요건(1개 선택)				서비스시간
주민 센터	[] 장애아동 가족지원	지원대상자	장애유형	<input type="checkbox"/> 뇌병변장애 <input type="checkbox"/> 청각장애 <input type="checkbox"/> 시각장애 <input type="checkbox"/> 언어장애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영유아)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정도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input type="checkbox"/> 언어재활 <input type="checkbox"/> 청능재활 <input type="checkbox"/> 미술심리재활 <input type="checkbox"/> 음악재활 <input type="checkbox"/> 행동재활 <input type="checkbox"/> 놀이심리재활 <input type="checkbox"/> 재활심리 <input type="checkbox"/> 감각발달재활 <input type="checkbox"/> 운동발달재활 <input type="checkbox"/> 심리운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언어발달 지원 (비장애아동)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장애유형 (부모 또는 조부모)	<input type="checkbox"/> 뇌병변장애 <input type="checkbox"/> 청각장애 <input type="checkbox"/> 시각장애 <input type="checkbox"/> 언어장애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부 []모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input type="checkbox"/> 미등록(영유아) 장애 정도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지원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장애 정도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원유형	<input type="checkbox"/> 주간활동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본형 <input type="checkbox"/> 확장형) ※ 확장형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 <input type="checkbox"/> 방과후활동서비스				

1) 부모급여(차액) 지급계좌로도 활용됩니다. 0,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자격 신청 시 부모급여(차액)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좌정보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 신청가능	
	지원대상자				
[]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자				
	긴급활동지원	[] 해당 (※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활동지원급여	신청유형	[] 신규신청 [] 변경신청 [] 갱신신청 [] 노인장기요양전환자 지원		
		변경신청 사유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장애상태의 변화	[] 학교생활	
			[] 직장생활	[] 취약가구	
			[] 독거(1인)가구 (19세 이상)	[] 거주지 이전	
[]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 조손가정 (19세 미만)				
특별지원급여	[] 출산 [] 자립준비 [] 보호자일시부재([] 결혼 [] 사망 [] 출산 [] 입원 [] 지역사회보호자)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자	출생정보	[] 국외출생 [] 복수국적	출생순위	
	지원대상자		[] 첫째아 [] 둘째아 이상		
	지급방식	[] 바우처(원칙) [] 현금(시설보호 아동 등) [] 현금(보호자명의 계좌)			
	카드정보 (국민행복카드)	[] BC(은행) [] 삼성 [] 롯데 [] KB국민(은행) [] 신한 ※ 유의사항 - 신규신청자의 경우, 발급 희망 카드사 및 회원 은행사(BC, KB카드를 선택한 경우)를 선택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지원대상자				
	지원 유형	[] 1급 유형 [] 2급 유형			
	신청요건 (1개 선택)	기관에서 심리상담 필요성 인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 대학교상담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Wee센터/Wee클래스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수행기관 [] 정신의료기관 [] 기타 기관		
	그 외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 우울 확인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 건 소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단태아 ([] 인력1명 [] 인력2명) [] 삼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쌍생아 ([] 인력2명 [] 인력3명) [] 사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삼태아 이상 ([] 인력2명 [] 인력4명)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회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자택 [] 기타			
보건소·주민 센터	지원대상자				
	지원 유형 (중복 체크 가능 조제분유는 변경 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 가능)	기본지원대상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예외지원대상 (자차제차제 사업)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p>1. 개인정보 활용 목적</p> <p>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p> <p>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p> <p>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인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호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경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공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p> <p>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p> <p>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

유의사항	확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합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추가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장보육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해당자에 한함)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첫만남이용권 지원신청 시 시설입소아동,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복수국적자, 난민 인정자, 보호자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및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격확인 가능한 서류 7.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의 경우, 신청요건에 따라 아래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의 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의뢰된 경우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국가 정신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 우울이 확인된 경우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²⁾)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여성가족부, 사회보장정보원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정보 처리의 제한)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대상자 자격판정 자료(신청서, 결과통보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자원자정보), 생리용품 이용권 지원 이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제도 관련 본인 확인에 관한 업무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를 위한 이용권(카드) 제작 및 배송 업무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업무
- 이용권 적정이용 관리 업무
- 기타 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통계 자료 생산 등 업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전자이용권 이용 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시 불이익

- 위 내용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확인절차
- 이용권 적정이용 관리업무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본 기관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정보제공
- * 본 정보는 이용권 발급을 위해 여성가족부 및 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서식 제3호]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7.4.)

(5쪽 중 1쪽)

사회보장급여 [] 결정(적합) [] 결정(대상제외) 통지서
[] 변경·정지·중지·상실

신청인/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비고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급여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생계·의료·주거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군·구청장이, 교육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도교육감이 각각 통지

-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및 임대차 계약조건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정지), 변경되거나 급여가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중지 :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임치 연체 등
 - 변경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임대차 계약조건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급여감소 :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경우 등
 -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자는 적합동지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부터 주택노후도 등에 따라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로 제공됩니다.
 - 교육급여 결정 통지서를 받으신 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카드 포인트가 배정(개별 문자 안내)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카드 포인트가 배정된 지급 학년도 이후 다음 학년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사용되지 않은 바우처 잔액은 환수됩니다.
- (예시1) '23학년도 바우처 '23년 연내 수령 시, '24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예시2) '23학년도 바우처 '24년 6월 수령 시, '24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교육급여 바우처는 유흥·사행 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업종 등을 제외한 교육활동 수강,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 및 신청 여부, 사용처, 결제·환불·취소 절차, 사용 기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 한부모가족 ([] 급여지급, [] 증명서 발급) [] 장애인복지 [] 기타() 급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분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장기간 종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또는 장애인복지(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증명서(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고 72%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자는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영유아보육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0, 1세의 경우 부모급여(현금)를 대신하여 부모급여(보육료)를 수급합니다. 부모급여(현금)과 부모급여(보육료)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보육료 이용을 중단하고 다시 부모급여(현금),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수급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급여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가정양육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반 수급 아동이 부모의 취업 여부 등 연장보육반 자격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입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등 가정양육수당 수급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며, 변경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보육반 수급 아동의 경우 유효기간 내일지라도 해당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직권으로 기본보육반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장애인연금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성 명	장애인연금 급여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 인				
배우자				

-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18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장애정도 변경 등으로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 : 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입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자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지원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지원내용			연락처	

-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연금지급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성명	기초연금 급여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인		원		
배우자		원		

- * 이 금액은 예상연금액으로 실지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권상실, 변경되거나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 **수급권 상실**: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 기초연금 급여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기초연금 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입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기초연금법」 제11조, 제28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아동수당 급여액 및 지급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지급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3.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 출생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단,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찾기 위한 법원 절차 진행, 미혼부의 자녀로 법원에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인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하여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60일 기간 산정시 제외)
4. 아동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해외출생 아동은 출생일을 출국일로 보고 국외 체류기간 산정)에는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5.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아동수당법」 제15조(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난민인정 취소, 난민인정결정 철회, 수급아동 연령 초과 등
 - 변경 : 보호자의 변경, 지급계좌 변경, 기타 정지사유 발생·소멸, 수급아동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경우(복수국적), 보호자의 이혼 등 수급아동의 가구원 구성이 변동된 경우
 - 정지 : 행방불명·실종 신고 후 30일이 경과한 자, 실종선고가 진행 중인 자,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6.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정지기간 지급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조치).또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아동수당법」 제2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8. 아동수당수급권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입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아동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아동·청소년복지 대상자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기타)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사회복지서비스 조사·심의 결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통)

지원대상		사회서비스명	정부지원액 (월)	본인부담금 (월)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본인부담금납부계좌		이용권 유효기간	지원내역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인 경우

활동지원등급	등급	종합점수	점	
		영역별 점수	일상생활·인지행동(X1)	점
			사회활동(X2)	점
			가구·주거특성(X3)	점
결정 급여	[] 활동지원급여 [] 특별지원급여 [] 긴급활동지원			
월 한도액	월 원	활동지원급여	월 원	
		특별지원급여	월 원	
		긴급활동지원	월 원	
본인부담금	월 원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급여개시일				
유효기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의견				

***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안내문 참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수급자인 경우**

이용 서비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서비스이용시간	[] 시간
급여개시일	
유효기간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 안내

-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 희망e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향후 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도 기존 카드로 금년에 대상자로 결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은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 BC카드(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 다만, 카드를 통한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 4번)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부담금 납부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지정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 제공기관 지정 계좌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서만 산정되고, 특별지원 급여에서는 면제됩니다. 또한, 긴급활동지원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4% 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됩니다.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활동 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4. 서비스 개시 및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 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가 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영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기저귀 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여성청소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생리대)을 국민행복카드(신청서 상의 신청인, 청소년 본인 명의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 청구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6조 이의신청) 및 영역별 점수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자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지원제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연간 2개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이용자 준수사항

-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인력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서비스 이용도중 신청자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서비스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사업은 연속하여 2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사업은 1인당 12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1회(12개월) 연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종료 최소 1개월 전에 해당 시·군·구에 연장을 요청해야 하며, 지원 연장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 이용자 신고내용, 행정기관 확인조사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용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급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교정시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및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에 6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중단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 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차상위계층 등 보유자격의 상실, 영아의 사망, 연락처 변경 등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 내용에 따라 지원금액 또는 부가서비스 수혜 여부 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동 가정의 영아양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청소년의 사망, 수급자격 변동 등 지원자격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읍면동주민센터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생리대 등 생리용품을,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함께 구매할 경우 각각 나누어 별도 결제하여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는 연속하여 6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연속하여 3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단,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제외)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생활비용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기재한 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항목	금 액(원)
합 계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기 타	

3. 제출된 지출서류를 심사한 후 60만원 ~ 100만원 한도로 귀하께서 신청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0. 1세의 경우 부모급여(현금)를 대신하여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을 수급합니다. 부모급여(현금)과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금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다시 부모급여(현금), 보육료 수급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급여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서비스유형	지원유형	보장기간/지원시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며 서비스 이용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실시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초과, 여성가족부 및 시도·시군구가 규정한 '서비스 이용 준수사항' 위반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타법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유형	급여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의료급여대상자로 선정되신 분께는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의료급여증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우선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진료 후 필요한 경우에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상급 의료 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숙인 등은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4.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다음 각 질환별 연간 365일이며, 불가피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0개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및 10개 만성고시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질환을 모두 합하여 연간 365일
5. 의료급여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되며, 빌려준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의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중지 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차상위 계층	생년월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귀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자격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지급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급여개시일

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시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 아동은 수급권 상실·정지·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상실 :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난민인정 취소 등
 - 정지 :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 등
※ 국외체류 90일 이상 지급 정지 예외 사유 : 인턴, 해외유학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
(단, 공적자료로 증빙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변경 : 거주지 변경, 지급계좌 변경 등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됩니다.
6.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권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입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부모급여(현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부모급여(현금)	

2. 부모급여(현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3. 부모급여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법」 제13조제1항제1호 의해 해당 기간동안 부모급여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4. 부모급여를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아동수당법」 제15조(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중지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 변경 : 보호자의 변경, 서비스 변경, 지급계좌 변경, 기타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행방불명 신고 후 30일이 경과한 자, 실종선고가 진행 중인 자, 해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부모급여(현금)→부모급여(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자격변경 시 반드시 자격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상호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차액지원 및 서비스 미이용에 따른 소급 지원은 가능).
6.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부모급여(현금) 수급권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부모급여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입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아동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부모급여(현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만2세 연령 도래에 따라 **부모급여(현금) 자격이 중지되고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자로 자격이 자동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부모급여(현금)	
			가정양육수당	

2. 귀하가 사전에 신청하신 부모급여(현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만 23개월에 속하는 달까지 소급하여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일시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 또한, 결정 당시 아동의 만 2세 연령 도래에 따라 부모급여 자격은 자동 중지되며, 가정양육수당으로 별도 신청없이 부모급여(현금) →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4.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서비스 변경이용 시 반드시 서비스 신청이 필요하며, **해당 자격신청 누락으로 인한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수급 아동이 부모의 취업 여부 등 연장보육반 자격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입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등 가정양육수당 수급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며, 변경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귀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첫만남이용권 급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우처 지급>

보호자		지급대상자			이용권 유효기간	이용권 지급금액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신청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기재					

<현금지급>

지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금융기관	계좌번호	지급금액	입금일	비고

3. 첫만남이용권 발급 안내

- 첫만남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시 등록된 카드사의 보호자 명의「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기존 카드로 금번에 대상으로 결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예외적인 경우(사실보호아동 등) 첫만남이용권을 현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은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 우리카드,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KB카드(KB카드, 전북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 궁금한 사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 4번)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서비스 개시 및 이용

- 첫만남이용권 신청 시 등록된 1개 카드에만 바우처 이용권(포인트)을 지급, 생성합니다.(생성 후 이용가능)
- 첫만남이용권의 바우처 포인트는 영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유흥업소·사행업소 및 관련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매금액이 통시서에 명시된 이용권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미사용 이용권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사용기간 종료 후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사용된 결제건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된 이용권 금액은 복원되지 않습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타 바우처(기저귀·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를 동시에 받으시는 경우 타 바우처 이용권이 우선 차감되며, 첫만남 이용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각 결제하여야 합니다.

☞ 중복수혜 대상자 결제 유형별 예시

- 사례 1 : 판매점에서 기저귀(또는 타 바우처) 2만원 구입(결제) 시
 - (기저귀 바우처 잔액 1만원인 경우) 기저귀 바우처 1만원 차감 후, 초과 분 1만원 개인부담
 - (기저귀 바우처 잔액 0원인 경우) 첫만남이용권 2만원 차감(초과 분 개인부담)
- 사례 2 : 판매점에서 기저귀(또는 타 바우처) 2만원과 생필품 1만원 동시에 구입(결제) 시
 - (기저귀 바우처 잔액 2만원인 경우) 기저귀 바우처 2만원 차감 후, 생필품 1만원은 개인부담
 - ※ 기저귀 2만원, 생필품 1만원을 각각 결제하는 경우 생필품 1만원은 첫만남이용권에서 차감 가능
 - (기저귀 바우처 잔액 0원인 경우) 첫만남이용권으로 기저귀, 생필품 3만원 차감(초과 분 개인부담)
- 사례 3 : 판매점에서 생필품 3만원 구입(결제) 시
 - 기저귀 바우처 유무에 관계 없이 첫만남이용권으로 생필품 3만원 차감(초과분 개인부담)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 준수사항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바, 반드시 이러한 목적하에 이용권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5) **아동수당**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6)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 7) **차상위계층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 8)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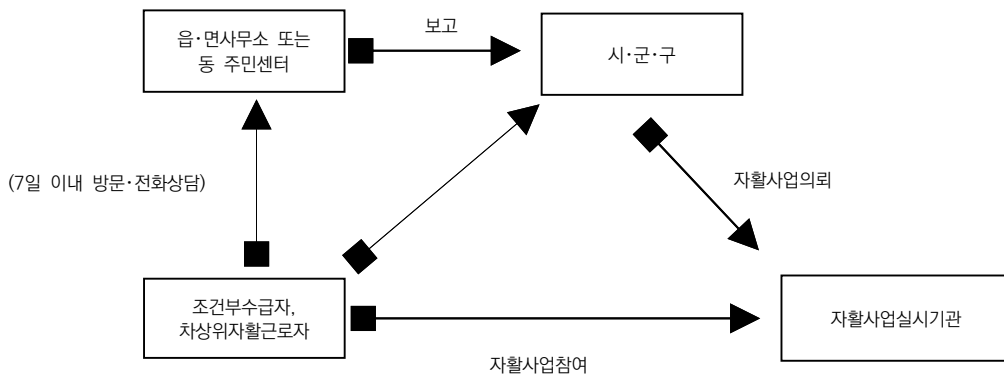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결정

조 건 부 수 급 자	대상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구 분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과유예자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과유예자
	특이사항	[] 가구원 일부보장() [] 조건부수급자() [] 기타()			
	보장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가구원은 근로능력·가구여건·취업상태 등이 기준에 해당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조건부수급자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 중 자활노력을 조건으로 선정된 수급자임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원은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시·군·구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야 합니다. (전화상담도 가능) ○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생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불가피한 사유(건강문제 등)가 있는 경우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조건부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2.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의 생계비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
※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한 경우 생계비가 다시 지급됩니다.
3.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자활소득 발생에 따라 생계급여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주 소	
	보장가구원수	명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결정사항
생계급여	원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¹⁾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²⁾ (다)	원	
의료급여	원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원	
주거급여	원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원	
교육급여	원	○ 소득인정액 (가=나+다)	원	
		- 소득평가액 (나)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원	

- 1) 소득평가액 :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은 세부 항목에 따라 급여별로 차이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 자동차는 기본재산액, 부채 공제 적용하지 않으며, 주거용재산 한도액 및 기본재산액을 급여별·지역별 차이 있음

[참고]○○○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내역

<소득 금액>

(단위: 원)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이전소득 등	부양비*
			의료급여:

* (부양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결과(미약구간)에 따라 수급(권)자 가구에 부과되는 소득

<재산 가액>

(단위: 원)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제4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이용자 안내문

1.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에게는 결정통지가 된 다음날, 신청인, 지원대상 청소년 본인 소유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 최초 바우처는 (상반기 신청)최초 신청한 달부터 6월 바우처까지 생성, (하반기신청) 신청한 달부터 12월 바우처까지 생성
 - 이후 연 2회 생성(1월, 7월), 익년 1월1일 미사용 바우처 소멸
2.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유통점에서 지원 대상 품목(생리대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외의 품목을 구매하거나 배정된 지원금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되므로, 개인별 잔여 포인트 현황 등을 수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를 통해 개인별 바우처 포인트 현황 확인 가능합니다.
4. 사업기간 종료(12월 31일) 후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지원금액은 자동 소멸 되니, 반드시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인출 불가)
 - 사용 기간 내(~12.31) 사용한 바우처에 대하여 사업 종료 후 (1.1~) 결제 취소를 할 경우 취소 바우처는 복원 되지 않으니 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 당일사용분에 대한 취소가 아닌 경우 승인취소 후 환불까지 약 3~5일 정도 소요되므로, 12월 20일 이후 카드결제취소는 지양 부탁드립니다.
5. 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구매처는 국민행복카드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각 카드(BC, 삼성, 롯데)별 구매처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지마켓, 옥션,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쿠팡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GS더프레시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편의점
롯데카드	롯데카드 똥샵, 옐포인트몰, 베팡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롯데마트, VIC마켓,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편의점
신한카드	신한카드 올댓쇼핑,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CU편의점
KB국민카드	KB PAY쇼핑, 국민행복몰, 쿠팡	GS25편의점, CU편의점

- ※ 카드사 별 구매처가 다름에 유의(정부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구매처 확대를 계속 추진 중이며, 확대 시 별도 안내 예정임)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구매할 경우 생리대와 기저귀(조제분유)를 2회로 구분하여 별도 결제하여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포인트를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6. 동 사업의 지원을 통해 구매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은 동 가정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문자 안내

1. 바우처 생성 시마다 지원 신청 시 기입한 휴대전화번호로 바우처 생성정보 문자 통보(총 2회 안내) * 상반기 1차 바우처 생성 시, 하반기 2차 바우처 생성 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생성 안내

000님의 생리대 바우처 00,000원이 생성되었으며, 바우처 잔액은 00,000원입니다.

잔액은 지원 자격 유지 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사용가능(내년 1월 1일 소멸)하며, 지원 자격에서 탈락할 경우 미사용 바우처 전액이 소멸 되니 가능한 빨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사용을 위해서는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신청 :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신한카드 1544-8868, KB국민카드 1599-7900

* 온라인 사용시 결제수단 선택 단계에서 반드시 바우처 결제 체크(간편결제시 바우처 적용 불가)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마이페이지 또는 1566-3232(내선번호 4번)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자발송 시점에 따라 바우처 잔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바우처 사용 안내 : 바우처 잔액 보유자 대상 매월 1회 이상 안내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사용 안내

○○○ 님의 생리대 바우처 잔액은 000,000원입니다.

바우처 잔액은 0000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지원자격 변동시 미사용 바우처 전액이 소멸되니 가능한 빨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직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은행 방문 또는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아 바우처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행복카드신청 :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신한카드 1544-8868, KB국민카드 1599-7900

* 카드사별 가맹점

* 온라인 사용시 결제수단 선택 단계에서 반드시 바우처 결제 체크(간편결제시 바우처 적용 불가)

아울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마이페이지에서도 잔액 확인 가능하며, 문자발송 시점에 따라 바우처 잔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바우처 만료 안내 : 바우처 잔액 보유자 대상 연 1회 이상 안내(12월)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사용기간 만료 안내

000님의 생리대 바우처 잔액은 00,000원입니다.

잔액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내년 1월 1일에 미사용 바우처 잔액이 소멸되니 반드시 올해 안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취소 시 바우처는 3~5일 후에 복원되며, 복원 전 재결제 시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바우처로 결제한 내역을 내년에 취소하여도 바우처는 복원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특히 연말에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콜센터(1566-3232), 복지로 홈페이지, 카드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바우처로 결제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결제 미선택(온라인), 비대상 물품 구매 등으로 인하여 본인부담으로 결제된 경우 내년에 결제를 취소해도 올해 바우처 복구 불가

[서식 제6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카드사용자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	
변경 신청 ※ 신청 사항에 체크 후 기입하세요.			
<input type="checkbox"/> 변경	변경 전 사용자	성 명	
	변경 후 사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추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삭제	성 명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카드사용자를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내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청을 접수한 날의 7일 내에 처리합니다. 2. 변경·등록 가능한 신규 카드사용자의 범위 : 부모,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구비 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과 대상자의 관계증빙서류 2. 변경, 추가 신청 : 카드사용자의 신분증 사본, 카드사용자와 대상자의 관계증빙서류 3. 삭제 : 삭제하는 카드사용자의 신분증 사본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신청자 및 변경사용자의 신분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div>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여성가족부, 사회보장정보원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정보 처리의 제한) 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합니다.	

[서식 제7호]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1.1.>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처분내용		[] 선정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8조, 「아동수당법」 제19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안내사항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①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③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④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⑤ 장애인활동지원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⑦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활동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⑧ 영유아보육지원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⑨ 아동수당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이내, ⑩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제8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중지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지원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지원 중지 사유		<input type="checkbox"/> 본인포기			
지원 중지 적용일자		년 월 일부터			
<p>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대해 위와 같이 중지신청을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안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지신청을 접수한 날의 익일 내에 처리합니다.				
구비 서류	1.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2.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제9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고인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			
부정 사용자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부정 사용 내용		*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는지 간략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위와 같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 부정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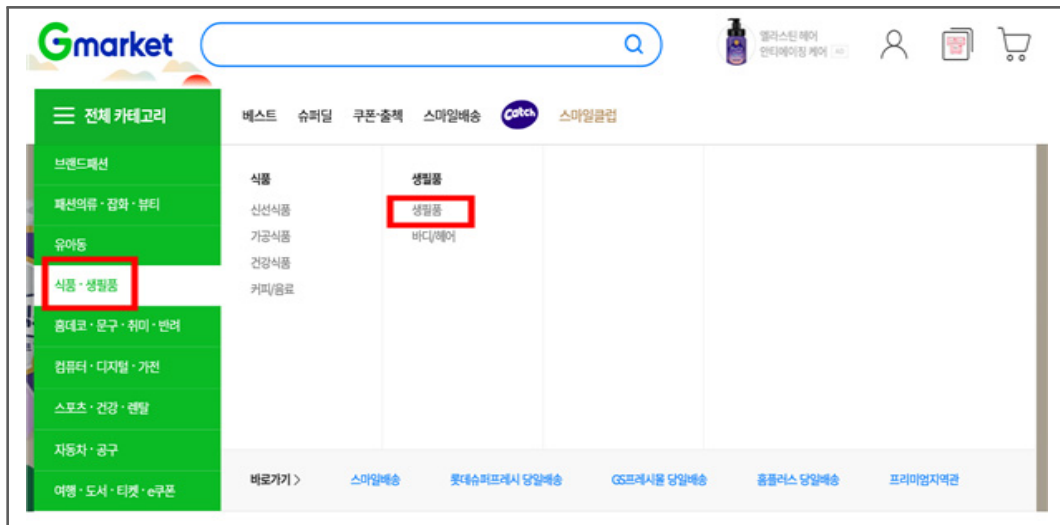
안내	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정 사용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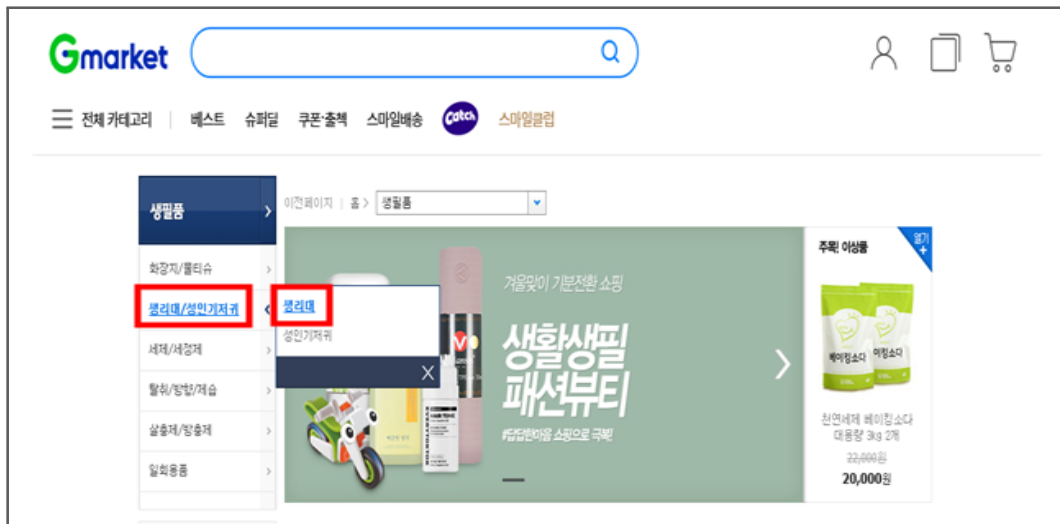
<지마켓>

- ※ 제시된 생리대 브랜드 및 제품은 예시이므로, 실제 구매시에는 이용자 선호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한 번에 한 가지 상품만 구매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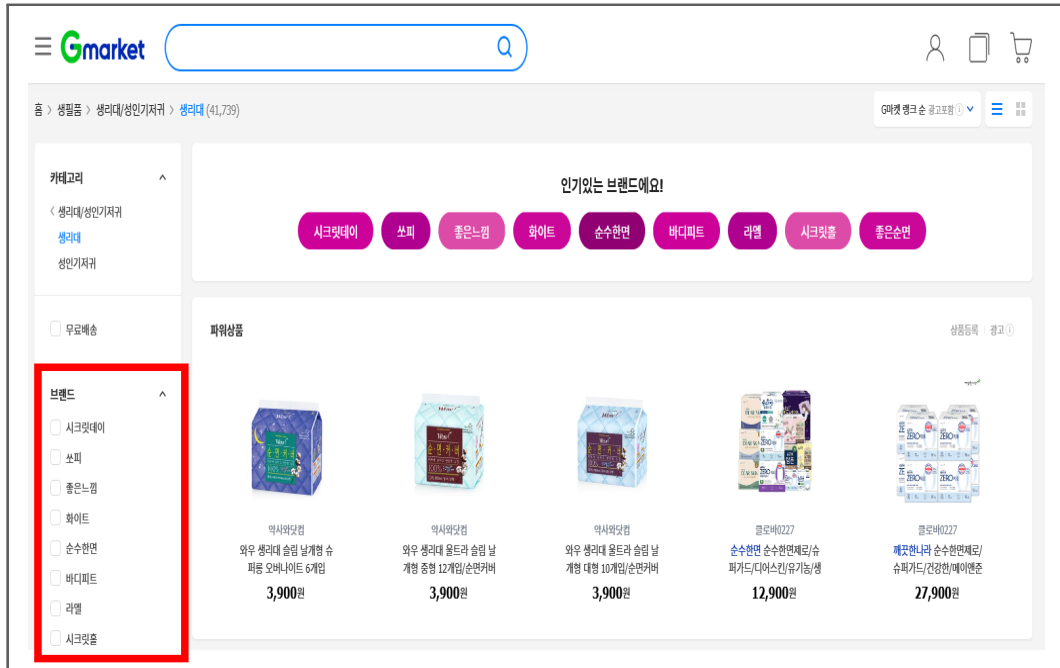
1. 지마켓 로그인 후 화면 왼쪽 카테고리에서 식품·생필품 → 생필품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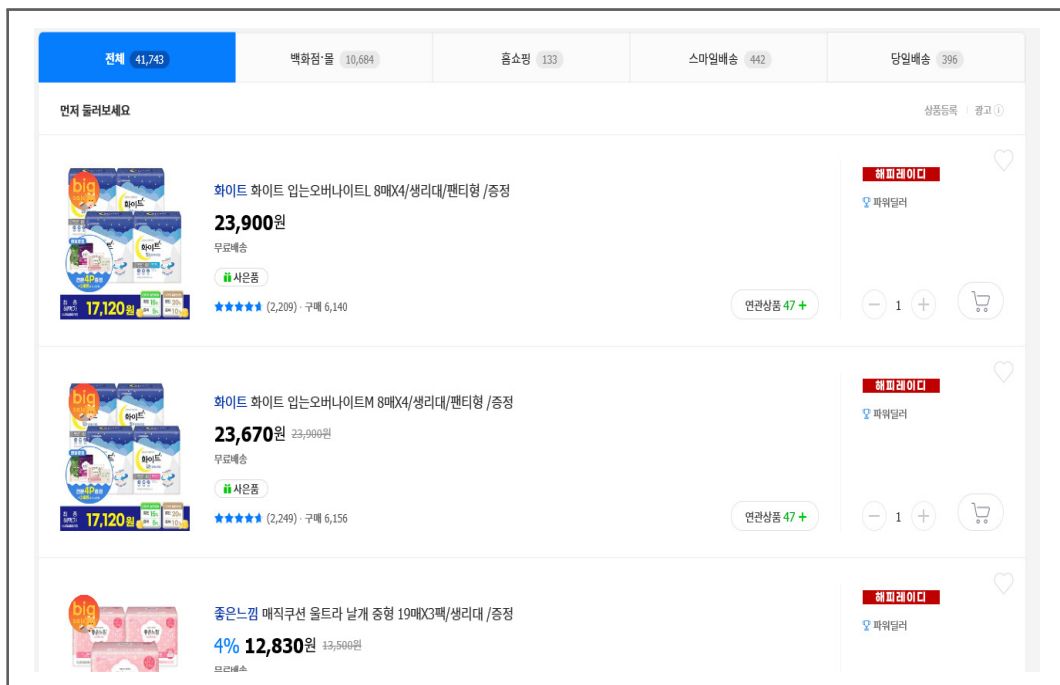
2. 생리대 메뉴에서 원하는 브랜드 선택



3. 원하는 브랜드 선택 * 무료배송 상품만 바우처 구매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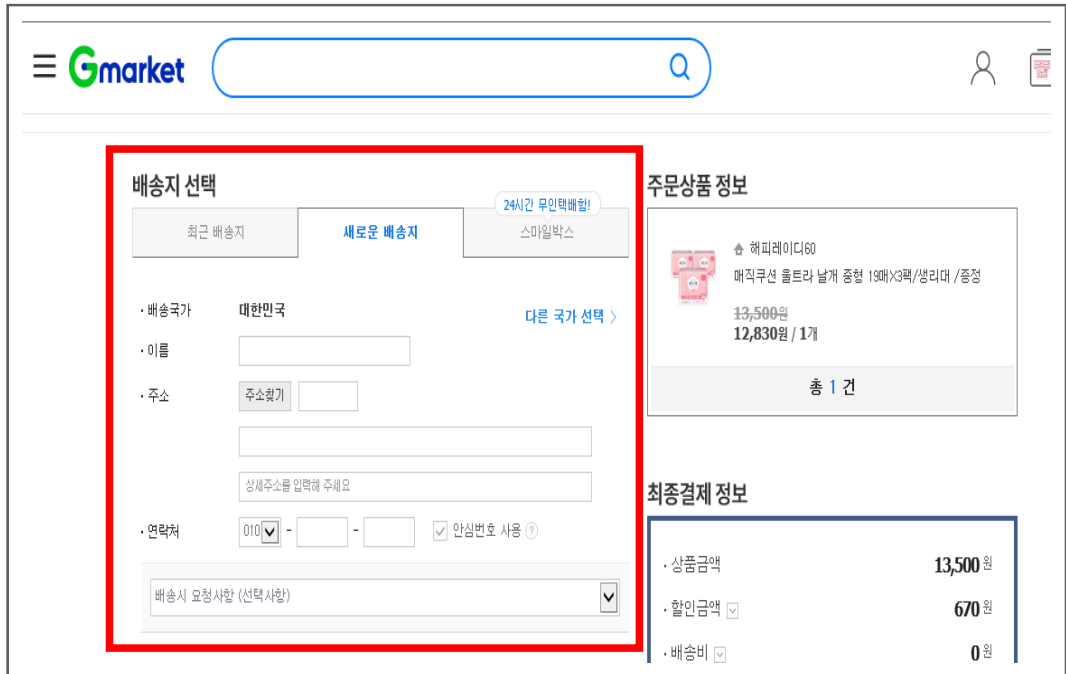
4. 원하는 상품 선택



5. 상세 페이지에서 상품 선택 후 구매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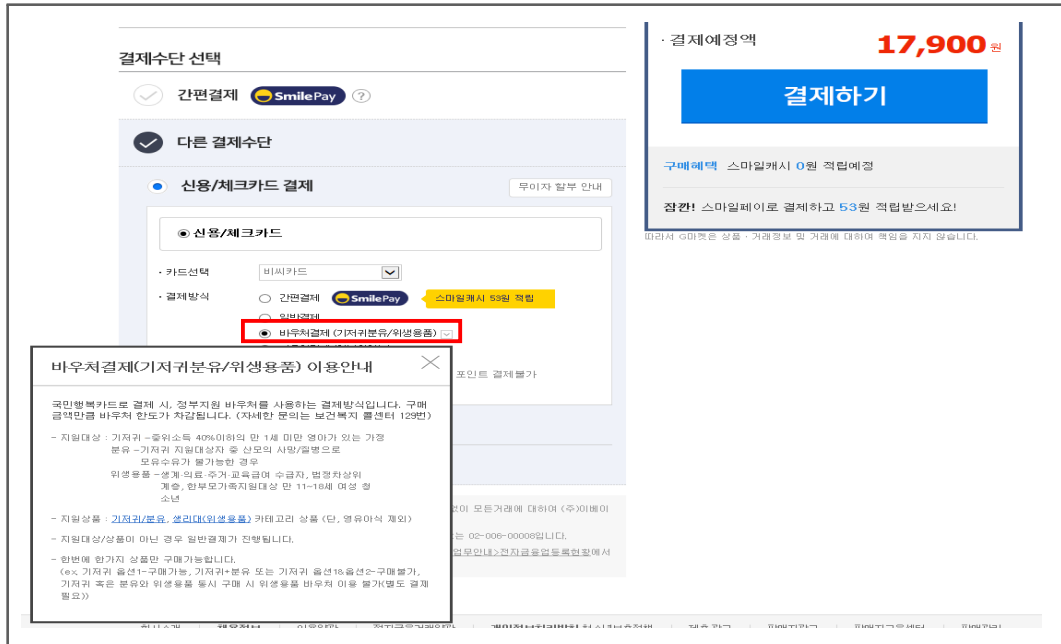


6. 주문결제 페이지에서 배송지 및 연락처 입력



7. 결제수단 선택 → 다른 결제수단 → 신용/체크카드 결제 → 카드선택 → 비씨카드

* 간편결제가 선택되지 않도록 확인 필요



8. 결제방식에서 바우처결제(기저귀분유 / 위생용품)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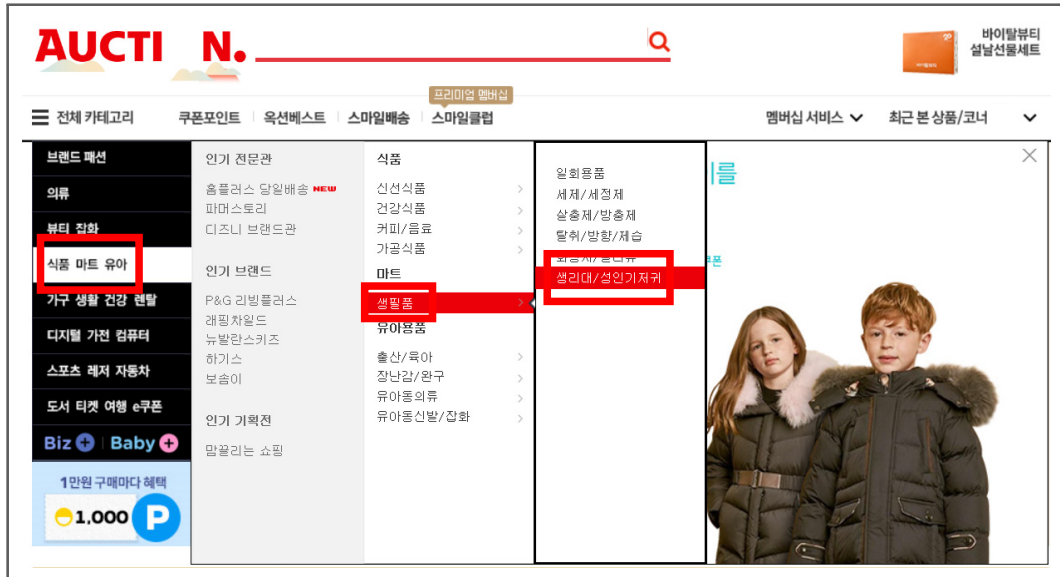
* 이용안내 팝업 종료 후 결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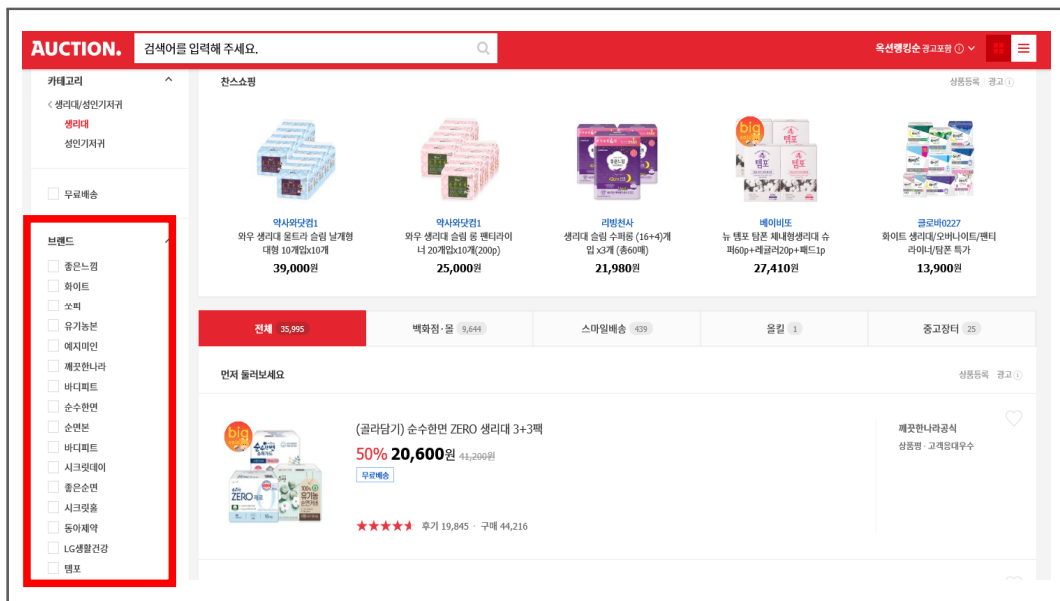
〈옥션〉

- ※ 제시된 생리대 브랜드 및 제품은 예시이므로, 실제 구매시에는 이용자 선호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한 번에 한 가지 상품만 구매 가능

1. 옥션 로그인 후 화면 왼쪽 카테고리에서 식품 마트 유아 → 마트 → 생필품 → 생리대/성인기저귀 선택




2. 생리대 메뉴에서 원하는 브랜드 선택



3. 원하는 제품 선택 * 유료배송 상품 구매 시 배송비는 본인 부담

진세 35,995 백화점·몰 9,644 스마일배송 439 쿠폰 1 중고장터 25

먼저 둘러보세요 상품등록 광고 ①


 (골라담기) 순수한면 ZERO 생리대 3+3팩

50% **20,600원** 41,200원

[무료배송](#)

★★★★☆ 후기 19,845 · 구매 44,216

깨끗한나라공식
상용평 · 고객응대우수

 좋은느낌 좋은느낌순수 순수 울트라날개 중형18매X8팩/생리대 /중정


8% **17,380원** 18,900원

[무료배송](#)

★★★★☆ 후기 424 · 구매 1,100

연관상품 43+

해피레이디61
최우수판매자

 특가 좋은느낌 화이트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중정

8% **12,420원** 13,500원

[무료배송](#)

해피레이디61
최우수판매자

4. 상세페이지에서 상품 선택 후 구매하기

홈 > 생필품 > 생리대/생인기저귀 > 생리대 >

깨끗한나라공식

(골라담기) 순수한면 ZERO 생리대 3+3팩

★★★★☆ (19,845) | 구매 44,216

50% **20,600원** 41,200원

매일매일 최대 5만원 할인! [후원하기](#)

내일 출발예정 - C백배

택배 - 무료배송

스마일클럽 최대 2.3% 캐시 적립

최대구매수량 10개

인증정보

지금 이 상품 **1,10,000** 명이 받으세요!

옵션선택

선택1

선택2

1-1.ZERO 소형 18P x 3팩
2-2.ZERO 중형 16P x 3팩

- 1 + **20,600원** <

총 상품금액 **20,60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5. 주문서 페이지에서 배송지 및 연락처 입력

주문서

장바구니 > 주문서 > 주문완료

1. 주문상품 확인적용

상품정보	합인금액	합인적용금액	판매자	배송비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p>[B622003322] 위스퍼 위스퍼 코스모 샴리대 중형36p x2팩</p> <p>본품32,900원 1개 32,900원</p> </div> </div>	0원	32,900원	피앤지샵A	무료

상품금액 **32,900원**

배송비 **0원**

옵션특별할인 **0원**

Smile Club
가입하고 Smile일게시 받기 사용 0원

• Smile Cash(1,218원) (X) 적용 0원

• Smile Point(0p) (X) 적용 0원

• 무료배송쿠폰(0장) 적용 0원

최종결제금액

32,900원

▶ 장바구니로 ▶ 알아두세요! * 옵션은 동선판매중개자이며 동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옵션은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배송지 정보 입력 (* 필수입력)

24시간 무인택배함!

새로운 배송지 스마일 박스 나의 배송주소록

이름:

주소: 주소찾기 상세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연락처: 010 - - 안심번호 사용 ?

배송 메시지: (49/120byte)

6. 결제정보 입력 → 다른 결제수단 → 신용/체크카드 → 비씨카드 선택

* 간편결제가 선택되지 않도록 확인 필요

3. 결제정보 입력

옵션 간편결제 SmilePay ? 설정

다른 결제수단

신용/체크카드 신용/체크카드

온라인이체 무통장입금 실시간계좌이체 CMA계좌이체

기타 휴대폰결제

카드 종류 카드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

할부 선택 무이자할부안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안내

4. 결제하기

20,600원

결제하기

원활한 배송을 위해 판매자에게 아래 정보가 제공됩니다.

제공받는자	깨끗한나라공식
목적	상품 및 경품(서비스) 배송(전송), 제품 설치, 반품, 환불, 고객상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결제

쿠폰포인트안내 >

스마일캐시결제안내 >

신용카드결제 안내 >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

인터넷 안전결제(ISP) 안내 >

7. 결제방식에서 바우처결제(기저귀 / 분유 / 위생용품) 선택 후 결제하기

3. 결제정보 입력

옵션 간편결제 SmilePay ? 설정

다른 결제수단

신용/체크카드 신용/체크카드

온라인미체 무통장입금 실시간계좌이체 CMA계좌이체

기타 휴대폰결제

카드 종류 비씨카드

결제 방식 간편결제 SmilePay 스마일캐시 0원 적립

바우처결제(기저귀/분유/위생용품)

바우처결제(일반잡업종)

할부 선택 일시불 무이자할부안내

*법인/기업카드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결제입니다.

- 지원대상**
 - 기저귀: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가 있는 가정 중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 분유: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등
 - 위생용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 만 11~18세 대상 청소년
- 지원상품**: 기저귀, 조제분유(기타 영유아식 제외), 생리대
- 유의사항**: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는 지원대상 품목(기저귀, 분유, 위생용품)에 한하여 구매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을 구매하면서 바우처 결제를 선택하는 등의 부정사용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결제 시 할부와 포인트 사용이 불가하며 지원대상, 지원상품이 아닌 경우 카드금액이 청구됩니다. 또한 기저귀, 혹은 분유와 위생용품 동시 구매 시 위생용품 바우처 이용이 불가하며, 별도 결제가 필요합니다.

4. 결제하기

20,600 원

결제하기

원활한 배송을 위해 판매자에게 아래 정보가 제공됩니다.

제공받는자	계끗한나라공식
목적	상품 및 경험(서비스) 배송(연중), 제품 설치, 반품, 환불, 고객상담 등 정보통신서

쿠폰포인트안내 >

스마일캐시결제안내 >

신용카드결제 안내 >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

인터넷 안전결제(TSP) 안내 >

현금영수증 안내 >

합인가능쿠폰: 1장	기간
-10,000원 할인	~2/28까지 (할인 요일)

쿠폰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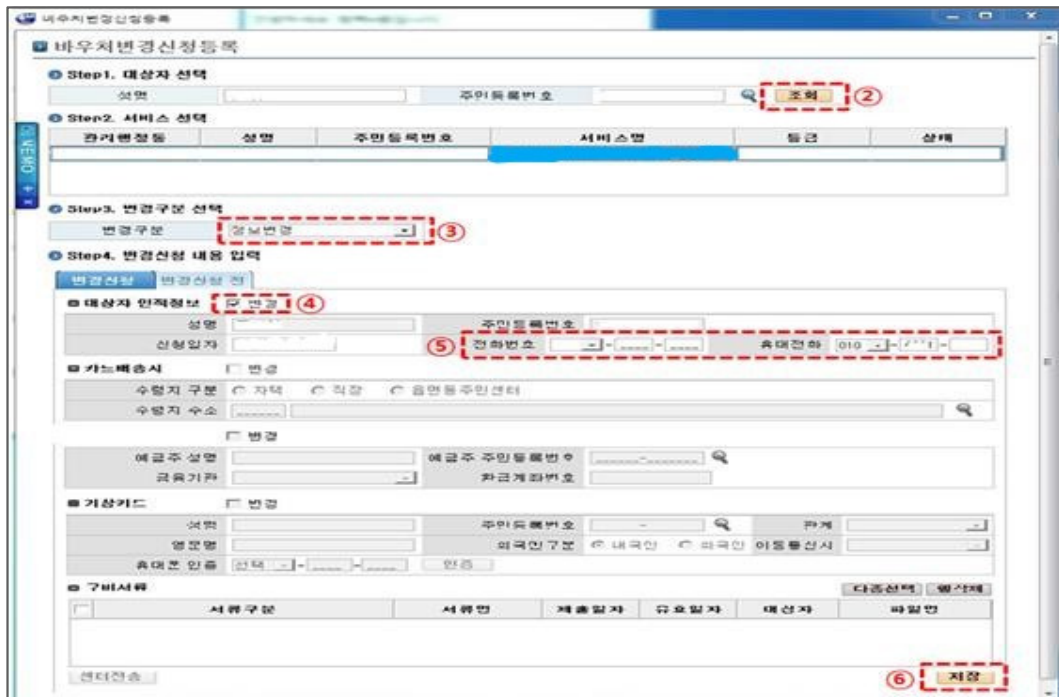
□ 대상자 정보(연락처 정보) 변경

- 공문을 통해 처리했던 연락처 정보 정정을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하여 지자체 담당자 직권으로 변경

〈 변경 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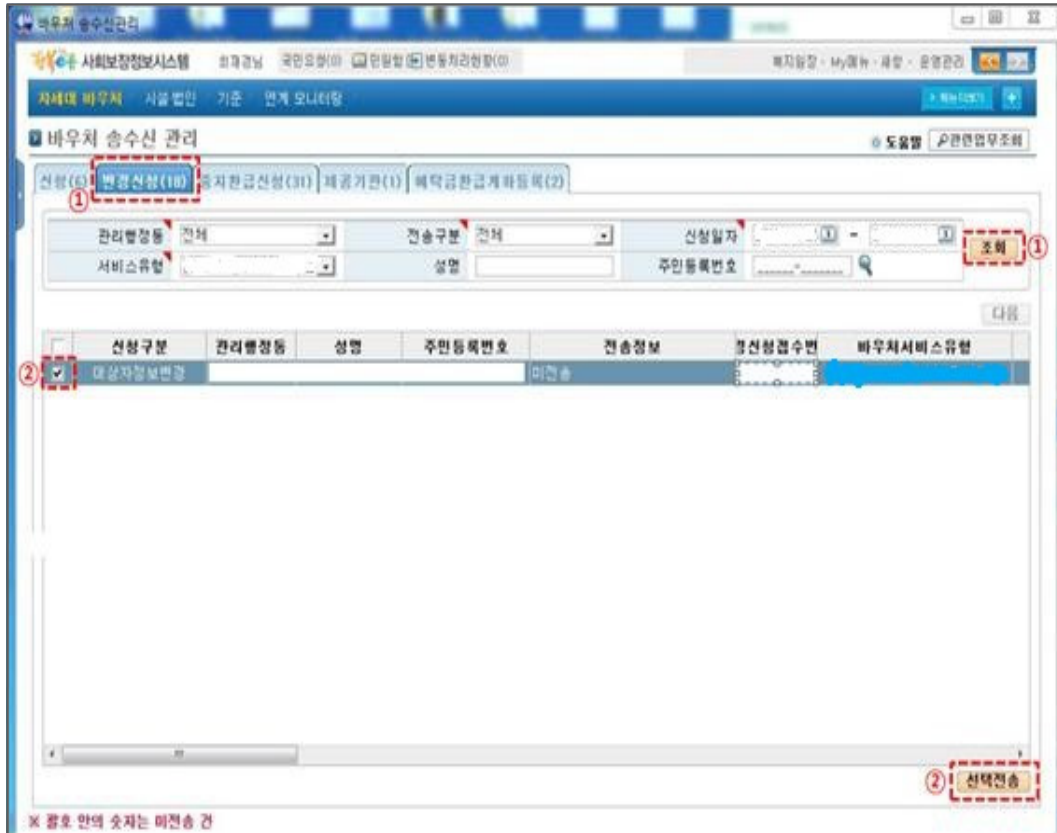
1. 바우처 변경신청관리

- ① 바우처 변경신청관리 화면에서 신청등록 버튼 클릭
- ② 바우처변경신청등록 화면에서 대상자 정보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 ③ 변경구분선택에서 정보변경 선택
- ④ 대상자 인적정보 체크박스에 √ 체크
- ⑤ 변경 연락처 정보(전화번호, 휴대전화) 기입(삭제는 기존 연락처 정보 미기입)
* 대상자가 청소년(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대상자 연락처에 신청인(또는 문자 발송 대상자) 연락처 기입
- ⑥ 변경신청서 저장 버튼 클릭



2. 바우처 송수신 관리

- ① 변경신청 탭 클릭 후 조회 버튼 클릭
- ② 변경 건 체크박스에 √체크 후 선택전송 버튼 클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Q&A

1. 생리용품 바우처 제도·지원기준 문의

Q1

생리용품 바우처가 무엇인가요?

- 생리용품 바우처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여성청소년들이 정서적 어려움 없이 선호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전자적인 형태의 이용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2

생리용품 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법정차상위대상 가구(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9세~24세 여성청소년에게 지급합니다.

Q3

국가유공자 등 타법률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이 되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급여 특례자도 인정)가 아닌 타법에 근거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4

시설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신청가능하며,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이 대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시설장 명의의 카드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대상 청소년이 시설을 퇴소할 시 반드시 바우처 중지처리 하도록 안내

Q5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 지원대상자에게 월 14,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지급하며, 매년 1월, 7월에 6개월분(84,000원)을 지원합니다(연 168,000원)
- 1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바우처 포인트가 생성(소급X)되며, 생성된 바우처는 전액 일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Q6

한 가구에 청소년이 여러 명 있다면 바우처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바우처는 청소년 개인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한 가구에 지원대상 청소년이 여러 명인 경우 바우처는 한 가구 내 청소년 인원수대로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바우처 지원금액의 소진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며, 생년월일 기준 연장자의 바우처 지원 금액부터 차감됩니다.

Q7

바우처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 바우처는 생리용품만 구매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바우처 지원금액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만 지원되며, 지원 금액의 한도를 초과한 생리용품 구입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지원 신청 관련 문의

Q8

생리용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작성(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자격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신청) 청소년 대상자 본인, 청소년과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기본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자격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Q10 신청시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사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를 제출하셔야 하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 지원 대상 청소년과의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복지포(www.bokjiro.or.kr)에서 다운받아 출력하시면 됩니다.

Q1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직접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청소년증, 학생증, 장애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분증 사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이 없는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시설거주증명서 등 본인의 주민번호와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12 대리인 신청은 누가 할 수 있죠?

- 부모님, 배우자, 가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가족 등 대리 신청이 어려울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대리 신청 시 청소년과 관계를 입증하는 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 단, 온라인 신청은 대상자 본인, 대상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Q13 신청 시 필요한 준비 서류가 어떻게 되죠?

- Q10 신청인별 구비서류 참조

Q14 지원 신청 결과를 알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 바우처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문 및 이용자 안내문을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알려드립니다.

Q15 매년 서비스신청을 새롭게 해야 하나요?

- 지원대상으로서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사용자가 연도별로 서비스신청을 새롭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자격기준에 변동이 생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지원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바우처 기능이 자동 생성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16

대상자가 타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변 보호가 필요한 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받은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Q17

지원받고 있는 도중 전출입 발생 시 신규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계가 됩니다.

3. 국민행복카드 관련 문의

Q18

지원을 받기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활용할 수 있나요?

- 생리용품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매비용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Q19

현재 국민행복카드가 없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생리용품 지원이 가능한 국민행복카드는 BC, 삼성, 롯데, KB국민, 신한 국민행복카드입니다. 금융기관(BC카드) 및 카드사를 방문하시거나 카드사별 전용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드신청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20

국민행복카드를 언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나요?

- 국민행복카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신청 이전에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바우처 지원대상 결정통지 및 전송수신 완료된 날의 익일부터 바우처가 생성되므로, 국민행복카드 기소지자 및 신규 신청자는 결정통지 수신 후 생리용품 구매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단,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사용등록을 하고 사용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Q21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신용카드로 받는 건가요?

- 14세 미만 대상자는 신청인(부모 등 주 양육자)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발급 가능하며 14세 이상 24세 이하 대상자는 대상자 본인명의 체크카드, 전용카드, 부모나 신청인(부모 등 주 양육자)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 ※ 전용카드 : 바우처 금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전용 카드로 전용카드 발급 조건*에 해당할 때만 신청 가능
- * 전용카드 : 계좌압류, 신용등급미달로 인하여 체크·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융활동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발급, 청소년의 경우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만 부모 동의하에 발급 가능하며 삼성, 롯데, BC(우리카드)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도 발급 가능(전담 금융기관에 발급 문의 필요)

Q22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 해당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나요?

- 은행발급 카드(BC계열 카드)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은행 계좌가 필요하며, 롯데·삼성카드의 경우에는 각 카드사별로 연계 가능한 은행을 확인하시어 해당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Q23 카드 발급은 가족 중에 누가 받아야 하나요?

- 국민행복카드는 누구나 발급 가능하나, 바우처 지원은 청소년 본인, 신청인(부모 등 주 양육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가능합니다.
-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 시 법정대리인 동행 또는 동의 등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전 유선확인 후 금융기관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24 두 개의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어떤 카드로 결제해야 하나요?

- 두 개의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모두 병행(바우처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5 국민행복카드를 분실하거나 손상된 경우 재발급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분실·손상 등의 사유로 국민행복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 금융기관 및 영업점 방문, 전용 콜센터 전화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26 국민행복카드를 재발급 받았는데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국민행복카드 재발급 신청 후 실물카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재발급 신청 정보가 연계되는데 영업일 기준 2~3일 정도 소요되오니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바우처 연계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을 권장합니다.

Q27

집을 비워 카드를 제때 못 받았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가면 되나요?

- 카드는 개별로 거주지에서 수령하시게 됩니다. 끝내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각 은행, 카드사별 반송센터에서 카드를 관리하오니 각 은행,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 후 수령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관되지 않습니다.

4. 신청정보 변경 문의

Q28

읍·면·동에서 접수를 완료했는데, 대상자가 정보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시·군·구에서 결정 통보전이라면 시·군·구에 '접수취소' 요청을 하여 읍·면·동에서 정보변경 후 다시 신청·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Q29

본인포기, 청소년의 사망, 자격기준 변동 등에 따른 사유로 지원 중지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원대상자인 청소년이 사망할 경우, 사망정보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변경결정 익일부터 사용 중지됩니다.
- 본인 포기 시 지원중지 신청서(서식 제8호)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행복e음의 주기적 자격변동 점검결과에 따라 자동 중지 처리되며 지자체에서 주기적으로 결과를 확인하고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 재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Q30

바우처 이용이 가능한 국민행복카드 사용자를 변경·삭제할 수 있나요?

- 최초 신청·접수 이후 국민행복카드 사용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읍면동에 방문하시어 신청인 변경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민행복카드 사용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청소년 본인 사망의 경우 외에는 기존의 지원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바우처 지급 중단, 카드 또한 사용 불가

Q31

신청 이후 바우처를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한 후 바우처 사용이 중지될 경우, 사용한 바우처는 반납(환수)해야 하나요?

- 본 서비스에서는 사용한 바우처를 환수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소멸됩니다.

Q32

중지 후 재신청 시 바우처 생성은 어떻게 되나요?

- 재신청 시 재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바우처 생성하되, 1회 지급액수(바우처 6개월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신청일로부터 생성될 바우처와(6개월 바우처 - 6개월 이내 기 사용바우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바우처 생성됩니다.
- 중지 이전에 해당 반기에 생성된 바우처를 모두 소진했다면 그 기간 내에는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으며, 다음 반기 때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5. 바우처 지원 및 사용 관련 문의

Q33 바우처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바우처는 월 14,000원씩 6개월분이 일괄 지급되고, 바우처 생성은 매년도 1월, 7월에 이루어집니다.
- 다만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월로부터 바우처 생성월(1월, 7월) 전까지 기간만큼 바우처가 생성되고, 이후 바우처 생성월부터는 6개월분이 일괄 지급됩니다.

Q34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적립되나요?

- 사업기간 종료(12월 31일) 후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지원금액은 자동 소멸 되니, 반드시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인출 불가)
- 사용 기간 내(~12.31) 사용한 바우처에 대하여 사업 종료 후(익년 1.1~) 결제 취소를 할 경우 취소 바우처는 복원 되지 않으니 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사용분에 대한 취소가 아닌 경우 승인취소 후 환불까지 약 3~5일 정도 소요되므로, 12월 20일 이후 카드결제취소는 지양 부탁드립니다.

Q35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상한액이 있나요?

- 사용가능 상한액은 없으며, 보유하고 있는 바우처 금액만큼 연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Q36

신청인인 어머니와 지원대상자인 딸이 각각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바우처는 어떻게 생성되어 사용하나요?

- 생성된 바우처는 신청서 상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인 청소년의 카드를 통해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카드를 사용하는 시점에 바우처 포인트는 차감됩니다.

Q37

바우처 포인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생성된 바우처 포인트는 카드포인트나 계좌 내에 인출 가능한 현금 형태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체크카드 연계계좌 잔액 조회나 신용카드 포인트 조회 시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 체크카드는 계좌 잔고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 금액 내에서는 결제되며, 신용카드는 대금 청구 시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금액 및 잔액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사이트 (www.socialservice.or.kr), 바우처사업 콜센터(1566-3232, 내선4) 또는 관할 시·군·구 담당 공무원(업무포털 참조) 등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경우 지원 대상자가 청소년이므로 청소년의 정보로 회원가입하신 후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8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 국민행복카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내에서 구매하고 싶은 생리용품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실 수 있으며 카드결제 시 바우처 금액으로 결제가 됩니다.
* 단, 생리용품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도록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
- 다만,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해서 사용하시거나, 생리용품 구매가 아닌 다른 용도로 카드를 이용하실 경우 본인 부담으로 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Q39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생리용품 구매가 가능한 가맹점은 어디인가요?

- 카드사별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카드사별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다르므로, 반드시 바우처 사용 전에 해당 가맹점이 보유하신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사용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지마켓, 옥션,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쿠팡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GS더프레시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편의점, PK마켓, 부츠(boots)
롯데카드	롯데카드 핑샵, 엘포인트몰, 베팡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롯데마트, VIC마켓,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편의점
신한카드	신한카드 올댓쇼핑,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CU편의점
KB국민카드	KB PAY쇼핑, 국민행복몰, 쿠팡	GS25편의점, CU편의점

※ 카드사 별 구매처가 다름에 유의

※ G마켓은 무료배송 상품만 구매가능함에 유의

Q40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 구매 시 영수증에 바우처 차감 내역이 표시되나요?

- 영수증 상에는 바우처 차감내역이 표시되지 않으며, 카드사별 문자통지 가입자에 한해서 문자로 차감내역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카드 청구내역서로 바우처 차감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41

포털 사이트 회원가입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원가입은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결정이 완료된 청소년의 정보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지원 결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42

바우처 잔액이 있는데 바우처 포인트로 결제가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바우처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우처 포인트로 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 ① 생리용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구매한 경우(메시지 없이 승인처리 됨)
 - ② 온라인 구매 시 바우처 결제가 아닌 일반 결제를 선택한 경우(메시지 없이 승인처리되며, 본인계좌에서 차감되거나 신용카드 결제액으로 통보됨)
 - ③ 바우처 잔액을 초과하여 결제하였으나 연동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승인거절 메시지 표출, 사유 : 잔액부족 또는 한도부족)
 - ④ 결제 시 배송비가 발생되었으나 연동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승인거절 메시지 표출, 사유 : 잔액부족 또는 한도부족)
 - ⑤ 정보원과 카드사간 잔량 전송과정에 누락이 발생한 경우(거래불가 메시지 표출, 사유 : 기타 카드사 문의) 등
- ①~④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 재확인 후 결제 부탁드립니다,
 ⑤의 경우에는 바우처사업 콜센터(1566-3232, 내선4) 또는 카드사 콜센터(BC 카드 1899-4651 및 각 은행 콜센터,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66-3336, 신한카드 1544-8868, KB국민카드 1599-7900)를 통해 바우처 잔액 확인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43

배송비도 바우처로 결제 가능한가요?

- 옥션, 지마켓, 국민행복몰, 쿠팡 등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구매 시 발생하는 배송비는 바우처로 결제하실 수 없으며 본인부담금으로 결제됩니다.
- 발급한 국민행복카드가 체크카드인 경우, 카드와 연계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결제가 불가능하오니 사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마켓은 무료배송 상품만 구매 가능, 옥션, 올마이쇼핑몰, 삼성쇼핑몰, 국민행복몰은 배송비 본인 부담 결제